

조선조 자휼전칙의 복지행정사적 의의*

곽 효 문**

〈目 次〉

- I. 머리말
- II. 조선조의 자휼전칙에 내재한 아동복지행정
- III. 자휼전칙에 내재해 있는 복지행정사적 의의
- IV. 맺음말

〈요 약〉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I. 머리말

복지행정의 발달과정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구조, 그리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 이 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하여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한영신학대학교 교수(Ph. D. in Social Welfare Policy).

있으므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며 그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복지행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대책을 개인이나 종교기관에서 담당해 오다가 차츰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인종, 종교, 정치이념, 경제수준 등에 차별 받음이 없이 가능한 한 모든 나라의 아동이 그의 복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강구하고 있는 점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따라서 그 사회·역사적 환경 아래서의 일정한 사회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동태법칙을 아는 것에 의해서 비로소 그 후의 예견이 가능해진다. 복지행정학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가 어떤 사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앞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상태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을 시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나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볼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고아, 절인아에 대한 어떤 원조나 보호가 현대적인 의미의 제도적인 것들과는 그 본질적 의의나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고아와 절인아에 대한 보호는 전반적인 빈곤상태에서 절인아동이나 고아에 대한 절대수준의 구제나 양육의 정도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의 본질적인 의의는 군주의 정치적 안정과 仁政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국민개개인의 복지관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의 아동복지행정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역사연구가 왕조중심의 역사였는데 반해서 민중의 일상 사회생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 복지행정사 연구는 새로운 사회관으로 인접학문분야의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가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조선조의 자활전칙에 내재한 아동복지행정

1. 조선조 아동복지법의 성립

현재까지 출간된 문헌에 의하면 조선조의 아동복지는 법령으로 나타나는 제도

사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나온 법령으로는 성종 원년(1470)에 편찬된 經國大典 惠恤條와 숙종 21년(1696)의 收養臨時事目, 그리고 정조 7년(1783)에 제정·반포된 字恤典則이다.

원래 유기아를 凶年惡歲에 민가에 수양하여 생명을 구출케 하는 법률은 제18대 현종 2년(1665)부터 제19대 숙종 11년(1685)에 이르는 동안 전후사목 가운데 年月日의 한이 각각 달라서 그 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몇몇 도에서 시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숙종 22년(1696)에 이르러서는 수양입시사목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凶荒에 당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부양할 수 없어 遺棄하는 자는 良民公私賤을 막론하고 타인에게 許하여 그 정상에 따라서 영구노비로 삼아 인명을 우선 구출케 하는 방도를 세웠다(구자현, 1969 : 127).

그런데 이러한 유기아나 부랑아의 수양이 대개 민가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또한 고아 등의 민가수양을 빙자하여 인신매매와 유괴 등을 일삼게 되는 폐단이 많아 조선조의 초·중기부터는 이러한 민가수양을 公許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민간의 관행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흉년을 당하여 路傍 유기아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민가수양의 관습을 공인 제도로 전환하여 수양관계에 관한 事目を 정하여 국가에서 규정해주는 대로 수양 관계를 획정하였다.

1) 經國大典(惠恤條)

아동구출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국대전, 혜홀조).

遺失小兒 漢城府本邑授原育人 官給衣料 過十歲還無故者 許原育人役使, 즉 “길을 잃은 어린이들은 한성부와 본읍에서 원래의 육아인을 접수하고 국가에서 의복과 식료를 지급해 주되, 10세가 지나도 돌아갈 緣故가 없는 자는 원래의 육아인이 사역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중종 이후 현종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게 하였으며 현종 12년에는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둔 자는 한성부에 알려져 공문을 받도록 하되 자식으로 삼든지 노비로 삼든지 그 임의대로 하게 하였다.

2) 收養臨時事目

숙종 21년(1695)에 그 동안 被災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몇몇 도에서 시행하던 것들을 전국에 걸쳐 시행토록 한 진휼청사목으로 유기아수양대책을 규정한 법령

이었으므로 수양임시사목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 사목은 영조 18년(1744)에 편찬된 속대전에 편입되어 확정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숙종이 윤희하여 시행한 진출청사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흉황을 당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부양할 수 없어 유기하는 자는 양민과 공·사친을 막론하고 타인에게 허가하여 永代노비로 하여 인명을 구하는 방도로 삼는다. 단 연령은 12세 이하로 한하며, 시행일자는 숙종 22년(1696)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해서 시행한다.

둘째, 유기아로서 어디서 온지 모르는 아해는 서울에서는 즉시 한성부에 보고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본관에 보고하여 각기 洞里人 등이 捧招立旨成給하고 饑餓에 價託하여 훗날 免役의 폐해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셋째, 13세 이상의 아해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飢病將死의 類는 良民과 公私賤을 막론하고 구조하여 使喚함을 허가하되, 그 일신에 한하여 雇工살이 하도록 하고 그 소생은 모두 본역(양민)으로 돌린다.

넷째, 입지성급 후 한성부면 즉, 畢緣啓聞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成冊하여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은 그 虛實을 일일이 收捧하여 마감일이 지난 후에 감영에 집계된 총인원수에 대하여 필록계문한다.

다섯째, 지방의 세력이 가운데서 유기아를 託稱하여 情願을 불문하고 강제 수양한 자와 벌써 수양하여 죽음을 면한 후에 자기의 노비라 하여 立案도 없이 위협하여 還奪하는 자는 輕重에 따라 科罪한다.

여섯째, 유기아와 고공의 류로서 이미 타인에게 구함을 받고 患難이 지난 후에 그 복역을 싫어하며, 橫反悖逆하는 자는 노비로서 주인에게 배반한 죄나 고공으로서 가장의 명예에 반한 죄로써 다스린다.

일곱째, 수양인으로서 본청에서 나간 立案을 받지 않은 자는 한성부나 지방관의 立旨를 받았어도 무효이다.

이상의 事目이 속대전에서는 수양연령에 대해 유기아를 수양하는 것은 3살 이전으로 규정하되, 만약 연거푸 흉년이나 큰 흉년을 당하게 되면 혹은 8-9살 혹은 15살로 규정하며, 그 양편(양부모와 유기아 자신)의 正常과 원하는 바를 들어서 혹 뒤의 소생들까지를 영구히 노비로 사역을 시키거나 혹은 연한을 한정하여 사역시킬 것인지는 흉년의 정도와 수양한 기간의 오래고 짧음에 따라 일체로 임시사목에 준거한다고 했으며, 그 부모와 族親이 3개월 이전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거두어 기름에 든 곡식을 배상하고 돌려 받는 것을 허락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신분문제에 있어서는 公私賤이 서로 혼인하여 유기아

를 거두어 길러 자식을 삼았을 때 양편이 부당한 경우에는 양민이 됨을 허락한다(정약용, 1985 : 29-31)고 하여 수양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상세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거의 수양과 관련된 것이다. 앞의 법령보다 아동구휼에 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며 풍부하다. 임시사목의 내용은 12세 이하의 遊離乞食兒童을 영구노비로 한다는 것과 13세 이상의 유리결식아를 고공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수양을 둘러싼 비리들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는 것 등이 큰 줄거리이다. 경국대전 해훈조가 순수하게 유리결식아동의 구휼과 관련된 선언적 국가규정이라면 이와 같은 사목은 이들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신분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휼전칙의 대두배경

조선조의 봉건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모순의 극복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개혁의 시대이기도 하였다(이호철, 1982 : 35).

조선조에 급속히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연유된 기존 신분질서의 해체 등은 그 동안 조선사회의 상부구조로 기능해 온 유교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조선 봉건왕조가 내포하고 있었던 모순과 분열들을 극대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노길명, 1988). 유교적 봉건체제 속에서 억압과 수탈을 받아 왔던 피지배계급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한 잠재성을 갖고 있었다. 즉, 당시의 민중은 유교주의에 기초한 왕조적 질서보다는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이상사회의 도래를 회구하는 민중종교운동에 압도되어 있었다(황선명, 1980 : 204-205). 또한 19세기는 이른바 민란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무수한 농민반란과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다.

당시 민중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困窮과 流離를 촉진시켰으며, 그들에게 저항의 계기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던 기근과 홍수,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와 민중의 유망이나 저항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3정의 문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사회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조선조의 민중들은 지방수령과 향리들의 부패로 인하여 각종의 인위적 재난 속에 놓여 있었다. 부패한 지방관과 아전들에 의하여 통치되던 당시의 농촌사회에서는 3정 문란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田政, 軍政, 選穀의 3정이 문란해졌다는 사실

은 지방민들의 생활근거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3정 가운데서 전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에 있어서 주된 세원 가운데 하나가 전분6등과 당해 연도의 작황에 따르는 연분9등의 기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분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 20년마다 量田이 시행되어야 함을 이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양전의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일부 均田使들은 지방의 富豪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옥한 토지는 등급을 낮추고 빈민의 전답은 등급을 높여 조세부과의 기준을 문란시켰다. 또한 해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豊凶의 등급을 지방관아의 아전들이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조 광, 1982 : 210).

이렇게 하여 전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정의 문란은 농촌의 强豪들을 더욱 부유하게 한 반면에 빈한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민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즉,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良役의 폐단으로 인한 군정의 문란 때문에 당시의 민중들은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군정의 문란은 黃口籤丁이나 白骨徵布와 같은 작태를 표출시켰다. 갓 출생한 어린아이를 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시켰으며, 이미 군포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이나 죽은 자까지도 군적에 올려 군포를 거두어 들였던 것이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胎中의 아이를 군적에 올리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어 군포를 부담시켰다. 그리고 개나 절구공이의 이름까지도 군적에 기재하여 군포를 징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포수취에 따른 폐단으로 인하여 당시의 농민들은 커다란 고초를 겪고 있었다.

3정의 문란으로 인한 폐단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주었던 것은 還政의 문란이었다. 원래 환곡은 匡救事務의 하나로서 흉년에 대비하여 실시하던 구휼제도였다. 그러나 賑貸의 대상이 바로 영세한 농민이었던 까닭에 환곡제도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또한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虛竭된 국고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환곡미를 과다하게 대여하여 그 利息을 취하게 됨에 따라 환곡미의 勒貸가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정부나 관리는 이 진대를 빙자하여 苛斂誅求를 행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환곡을 매개로 한 부정행위가 범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입이 증가하는 데에 비례하여

관리의 작폐가 증가되고 농민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조선조 후기의 민중들은 제도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로 인한 인위적 재난을 끝없이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재난으로는 3정의 문란에 의해 파생된 각종의 피해를 들 수 있다. 당시의 민중들은 군정과 전정 그리고 환곡제도의 문란으로 인하여 극심한 빈곤과 고통 중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한 합법적 방법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고 농촌문제의 합리적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민중들은 집단행동을 통하여 관리의 가렴주구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함으로써 조선조 후기의 사회에서는 민란이 빈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 후기의 민중들은 상, 하의 관리들로부터 가해지는 작위적인 재해와 함께 자연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종의 재해에도 시달리게 되었다. 당시의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재해들은 민중의 생활고를 심화시켰다. 또한 그들은 각종의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었다. 우박, 해일, 홍수, 기근, 전염병 등은 끊임없이 민중의 생활을 위협하였다(정조실록, 30권 75장 정조14년 7월 술자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 후기의 사회는 3정의 문란과 민란의 발생 등의 내적 충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인한 외적인 충격까지 가해진 대 혼란의 격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의 수습과정에서 지배층의 무능이 여지없이 폭로되기도 하였고 민중의 생활은 더욱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3. 字恤典則의 특징

1) 국가의 보호책임

자휼전칙은 이전의 유기아나 행걸아의 구휼법령들에 비해 국가의 책임영역확대를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이전 법령들의 일관된 내용인 민간수양원칙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원칙으로 남아있게 할 수 없었다. 반대로 부분적이기는 하나 유기아나 행걸아의 구제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자휼전칙과 같은 아동복지행정이 정조7년이라는 시점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후기의 사회변동 가운데 하나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농민의 계층분화였다. 18세기 후반부터 남부지방에서 널리 보급된 이앙법과 이모작농법은 획기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이앙법의 도입은 18세기 水利事業의 好轉과 재야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농학연구의 隆盛 등에 의해 농업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였다(김용섭, 1971 : 215-218).

이양법과 이모작농법의 도입에 의해 단위면적당 노동력은 절약되고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며, 동일한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어 剩餘의 노동력이 경작지로부터 배제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한편 생산성의 증대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층 내부에 계급분화를 야기시킴으로써 토지와 노동력을 갖는 양민은 경작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된 반면에 농민은 오히려 榮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농민층의 계층분화는 대다수의 농민을 無錢農民으로 轉落하게 하였다. 또한 농촌에까지 파급되었던 상품경제의 발전은 농촌사회에서의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보다 순수한 경제적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변질시켰다. 소작인은 이제 지주의 인신적 지배와 보호로부터 벗어나 이중의 의미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상태로 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지주의 인신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보다 순수한 경제적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지주의 보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농지로부터의 농민의 축출과 농민의 계층분화, 이중의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 획득이라는 세 가지 서로 관련된 사회변동의 양상은 조선조 후기사회가 封建社會의 해체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자연재해가 지니는 의미와 그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처방식에도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즉, 재해의 발생이 이전까지의 지주에 의한 전통적인 보호에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자연재해는 이전시대의 그것에 비해 사회적인 여파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조선조 후기의 사회변동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권력은 백성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자휼전칙의 구성

자휼전칙은 흉년을 당하여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방법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1책 5장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흉년을 당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리므로 이들이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또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양하게 하기 위한 구휼법이다.

정조 7년(1783)에 綸音과 함께 事目을 정하여 국한문으로 인쇄되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반포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총 9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호대상자인 행걸아는 부모나 친척 또는 上典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유기아는 3세 이하의 유아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구호하여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며, 날마다 1인당 정하여진 분량의 쌀과 간장, 미역을 지급하였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하여 젖을 먹이고 유모나 거두어 기른 사람에게도 정하여진 분량의 쌀과 간장, 미역을 지급하며,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고자 원하는 자는 진휼청의 立案을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55-56).

3) 자휼전칙의 분석의 틀

자휼전칙의 내용을 사회적 할당과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eil Gilbert, 1974).

첫째, 사회적 할당의 측면에서 보면 행걸아의 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이 전제된다. 이는 경국대전 이래의 친족책임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구휼대상으로서의 아동은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유기아와 행걸아로 대별하고 있으며, 행걸아의 경우 4-6세, 7-10세로 세분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기아는 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자력으로 호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가장 可矜한 처지에 있는 아동이다.

둘째, 급여의 측면에서는 민가수양의 경우와 진휼청 留養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가수양의 경우 자식이나 고공 또는 노비로 수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아동이나 수양가정에 제공한 급여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증빙문서인 立案을 만들어준다거나 수양인이 가난하여 충분한 양육이 어려울 때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가수양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구휼양육책임이 수양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급여할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에 진휼청에서 유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각종 급여의 제공이 두드러진다.

유양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주거시설이다. 즉, 움집(土宇)을 진휼청 외창문 밖에 마련하여 留接할 곳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움집은 일종의 간이주거시설로서 당대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주거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구휼을 위한 또 다른 급여는 식량(쌀, 장, 미역)으로 급여기간은 유기아의 경우 보릿고개 이후까지도 식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걸아의 경우 흉년에만 보리나기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의복과 의료의 급여는 유기아와 행걸아를 막론하고 의복이 없는 경우 종을 대로 헤아려 지어주고 짓어미의 경우에도 의복을 지어주도록 하였으며, 의료에 있어서는 진휼청에서 혜민서에 분부하여 救療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달체계의 경우 요구호아동의 발견과 보고, 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전달체계는 서울의 경우, 요구호아동을 발견하여 보고하는 일은 진휼청 직원 외에도 관리와 백성들의 소임이지만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진휼청 낭관(6품관)이었다. 그는 수양과 유양에 따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조사하는 관리였다. 예를 들면, 진휼청 낭관은 매달 그름에 아동의 발육과 성장상태를 점검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 진휼청의 고지기(김태규, 1979 : 214-218)와 짓어미를 문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방에서는 지방관의 책임 아래 구휼업무가 수행되었다(곽효문, 1997). 각 동리의 里任과 각 면의 面任은 유기아나 행걸아를 수령에게 보고하게 되고 수령은 서울에서와 같이 구휼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령은 매달 그름에 이를 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왕과 진휼청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에서의 아동구휼과 관련한 특기할 점은 행걸아의 경우 흉년이 들어 진휼을 베푸는 고을 즉, 設賑하는 고을에서만 구휼하고 유기아의 경우에는 어느 고을에서나 구휼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자휼전칙의 시행을 위한 재정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진휼청의 곡식이 그 재원이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常賑穀과 自備穀이 그 재원이었다. 즉, 恤錢은 모두 호조의 元會穀으로 회감하였는데, 정조 24년(1800)에 원회곡이 부족되므로 諸道の 각종 출전을 아울러 진휼청곡으로써 會滅할 것을 廟堂에서 延稟하여 재결하였다(만기요람, 재용편)고 한다.

4) 자휼전칙의 시행

자휼전칙의 성립은 조선조 후기의 사회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성립배경과 경위는 자휼전칙이 제정된 정조7년(1783)을 전후한 주요 사건들의 이해를 통해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자휼전칙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조 6-7년의 연이은 흉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조 때의 각종 진휼 사실을 기록한 혜정요람(곽효문, 2000)에는 당시의 흉년의 범위와 정도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전국 8도에 걸친 극심한 것이었다. 정조 7년의 추수기에 각도의 감사로부터 올라오는 장계는 예외 없이 해당도의 흉작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다면 각종 세금의 감면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시행, 양곡방출과 무상지급, 의료보호의 실시, 복지재원의 조달 등으로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피재농민들의 소득유지에 관한 것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인 행걸아, 유기아, 행려병자 등의 구휼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근거의 상실이나 감소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무의무탁한 빈민 또는 아동들의 생존유지에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이들 요구호아동들의 출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하상락, 1998 : 251).

원인이야 어떻든 일단 버려진 아동이나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생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흉년의 경우에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의 수효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원, 즉 식량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더욱이 봉건사회해체기에 들어선 조선조 후기사회의 사회상을 상상할 때 우리는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초목근피로 연명하던 생활을 하던 상황에서 유기되거나 가족과 이산되어 떠돌며 걸식하는 아동들(행걸아)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결국 자휼전칙의 직접적인 성립배경은 정조6-7년에 걸친 대흉년이라는 자연재해의 결과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자식을 버리는 사례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 수효의 증가로 인하여 백성의 부모 노릇 하는 왕의 책임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립의 계기를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농지로부터의 농민의 축출, 농민의 계층분화와 전통적 보호관계의 동요 등으로 설명되는 조선조 후기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보호의 역할을 기대 받던 국가권력의 기능변화라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휼전칙의 성립배경과 그 과정을 통해서 시사되는 점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 발달론 가운데 합리이론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조 후기의 사회변동에 의해 야기된 조선사회의 변모는 자연재해를 계기로 당시 존재하고 있던 미약한 구호제도에 대해 결정적인 도전을 제기해왔으며 따라서 요보호인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증대와 서비스의 확대는 당시의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동문제에 대한 실질적 반응이었던 셈이다. 덧붙여 자휼전칙이 왜 하필 정조7년에 성립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적잖이 책기론¹⁾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정조는 조선조의 왕들 가운데서 어

진 임금의 표상으로 즉위기간 동안 탕평책을 실시하고 실학자들을 중용하여 선진 과학기술 문명을 적극 수용하였고, 수원성의 축조 등에서 보듯이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보면 정조는 당시의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자휠헌칙의 제정을 백성에 대한 일종의 의무감 비슷한 것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이 새로운 아동구제법령인 자휠헌칙의 제정을 촉발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Ⅲ. 자휠헌칙에 내재해 있는 복지행정사적 의의

1. 조선조 아동복지행정의 실상

조선조의 아동복지행정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법령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진보적인 내용을 지닌 법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자휠헌칙이 지닌 내용상의 특징들이 실제로 당시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성격과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휠헌칙은 아동구휼에 대한 국가의 개입영역이 확대되었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거를 활용한 자료는 승정원일기 매일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²⁾ 승정원은 조선조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경유하는 곳이었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서 이루어졌던 매일의 정사를 기록한 공식문서로

1) 책기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하는 용어로서 국왕이 이러한 책임을 져야하는 논리적 근거는 善政이나 仁政과 같이 군주가 도덕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책기론의 근본사상은 天人合一說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국왕은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므로 국왕을 초인간적인 하늘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백성들의 민생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하늘이 분노한 결과로 보고 하늘이 노한 이유는 국왕의 부덕한 정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희덕, “고려초기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 역사학보, 94-95 합집 (1982), pp. 161-162.

2) 승정원은 국가의 광범위한 공사와 의례적인 일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일기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국정 일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 매일의 기록으로서 일차적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신호석, 1961: 275).

서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더불어 귀중한 사료로서 그 가치는 실록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승정원일기 가운데 진휼과 구휼 등에 관한 기사들은 진휼청과 한성부의 일로서 왕에게 啓聞하는 경우와 각 도의 감사, 관찰사 등의 보고내용 등에서 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왕과 대신들과의 문답내용에서도 가끔 중요 사안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구휼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록하는 양식은 보고하는 신하의 성명과 아동발견자의 신상, 발견장소, 아동의 연령, 성별, 성명, 수양된 경우 수양인의 신상, 관의 조치사항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아동복지기관에서 작성하는 기록(case records)에 비하면 몹시 간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록들은 부분적인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2) 조선조 아동복지행정의 실상

자휼전칙 반포 이후 유기아동이나 행걸아동 등을 발견한 장소를 보면 거리에서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고 일종의 빈민굴을 형성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다리 근처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발견자의 문 앞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유기아, 행걸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기아의 경우에는 거리-발견자의 문 앞-다리의 순으로 발견장소가 서열을 이루는데 비해 행걸아의 경우에는 거리-관청-다리-시장의 서열을 이루고 있다. 유기아의 경우 문 앞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동을 버리는 부모나 연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집에서 거두어 기르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기아습속의 하나인 소위 「개구명반이」 습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을 발견하여 해당 부에 보고한 자의 소속이나 신분구분을 보면 우선 관청에 소속된 관리를 특히 순찰군사들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요 관청의 야간경비원이나 방범경찰에 해당되는데, 이들에 의한 아동발견과 보고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그들의 업무가 주야간 순찰하는 일인 까닭에 아무래도 요보호아동을 발견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자휼전칙의 내용과급이 이들 관리들을 중심으로 우선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경국대전 혜휼조가 유리결식아동의 구휼과 관련된 국가규정이라면 수양임시사목은 이들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신분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자휼전칙은 급여와 재정의 측면에서 국가개입이 두드러져 아동법 내지는 구빈법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국대전 이래의 친족부양원칙과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념, 민가수양의 원칙이 일관되게 표방되었으나 자출전칙 이후 최소한의 국가개입 이념이 어느 정도 후퇴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개입을 표방하여 민간수양과 진흥청 유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흥청 유양의 경우에는 급여가 제공되었다. 아동의 수양과 관련하여 자식, 노비, 고공 등으로 수양되었으며, 유양의 경우엔 진흥청 낭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발육과 성장상태를 점검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 진흥청 고지기와 찻먹이를 문책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자출전칙에 내재해 있는 복지행정사적 의의

조선조 후기의 시대상황은 饑民이 늘고 걸식하는 빈민과 유기아의 증가로 인하여 무제한의 보호와 조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무의탁한 四窮³⁾의 구제에 관한 진흥청의 구호사업의 준칙으로 자출전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의 전환점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중앙에 있어서는 진흥청이 직접 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관부가 중앙을 모방하게 하였다. 그 수용시설로서는 관부 청사 외부에 토막을 지어 민간수용을 허용하였다. 특기할 것은 보호직책을 태만히 한 담당관리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복지행정사의 이론발전과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복지행정사의 이론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 발달론과 관련하여 자출전칙은 아직은 가설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책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자출전칙이 성립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조 자신이었으며 자출전칙의 지속적인 실천을 독려한 사람도 역시 정조였던 것이다. 나라의 임금인 정조가 왜 다른 왕들은 지나쳐 버린(종래의 제도를 고수한) 유기아동의 구호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특정의 왕이 특정의 아동복지행정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기론 이외의 적절한 대안적인 가설을 채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복지행정사의 한 부분인 아동복지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전통사회에서 입양의 두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수양과 유양⁴⁾이라는 두 제도가 존재하였

3) 환과고독이라고도 하는데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불행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는 결코 새롭지 않은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가계계승을 위한 문중 안의 입양(즉, 양자)은 현행 민법에도 그 조항이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입양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논의한 수양의 개념은 가계계승을 위한 동성동본의 남아입양과는 다른 양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입양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무의탁한 아동의 입양이 한국전쟁 후 대두하였다거나, 전통적인 입양은 가계계승의 방편으로서 동성동본의 남아에 국한되었다는 등의 일면적인 언명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 음 말

1. 연구결과의 요약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적 기능을 돕기 위한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이나 산물로서의 정책, 제도,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의 구휼에 대한 선언적 법령에서 후기로 가면서 현종 때의 국가의 허가에 의한 민가수양의 허가에서 숙종 때의 수양임시사목의 반포, 정조 때의 자휼전칙의 반포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신분법적인 성격이 강해짐과 동시에 수양인의 권리가 견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국가에 의한 유기아, 행걸아에 대한 보호내용도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조선조의 아동에 대한 구휼은 국가가 전적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고 유기아로 분류되는 3살 이하의 아동을 제외하고 행걸아인 4세-10세에 대해서는 보릿고개까지만 유양시키고 결국은 모두 민가수양으로 돌려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은 민가에서 자식이 되거나 혹은 고공, 노비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며 수양하는 집이 몹시 가난할 경우, 식량을 보조해 주는 외에는 다른 어떤 규정도 없다. 진휼청에서 임시로 수용하는 경우의 留接所라는

4) 앞쪽은 남의 자식을 일정기간 동안 맡아 기르는 것이고 뒤쪽은 젖을 먹여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것이 응덩이를 파고 사방에 거적을 두른 것과 같다고 할 때 조선조 전반의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선조의 아동에 대한 구휼이 조선조 구휼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이라 할 饑饉을 면하게 하는 왕의 仁政에서 나오는 특별히 四窮에 대한 구빈의 성격을 뛰어넘는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제도가 조선조의 그것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2. 복지행정사적 특징과 한계

자휼전칙 속의 복지행정사적 의의는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수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하였고 빈곤가정아동을 위해서 위탁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보호제도를 통하여 시설수용아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적 분위기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유리결식아동의 구휼과 관련하여 이들의 사회적 치우는 물론 급여와 재정의 측면에서 국가개입이 두드러져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특징은 친족부양의 원칙과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념, 민가수양의 원칙이 일관되게 표방되었음은 물론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있었다.

입양의 측면에서는 조선조에 혈족중심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의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아, 부랑아, 고아를 위한 민간수양제도가 있었다. 세종19년에는 사대부가 家의 양자입사문제에 관한 대강이 발표되었고 제19대 숙종 때에는 수양임시사목이 제정되어 실시됨으로써 종족본위의 양자제도 외에 유기, 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구빈법이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구빈법보다 약200년이나 앞선 경국대전에 이미 아동복지의 이념이 표방되었음을 통해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영국보다 앞섰다는 史實을 통해서도 이 제도가 영국이라는 복지선진국의 아동복지보다 훨씬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조 아동복지행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사회의 4단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직도 아동을 종족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며 중세 종교단체의 자선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또 영국의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아동의 노동관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복지권 확립과 특수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복지라는 관념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둘째,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출아동, 부랑아, 미아, 비행아동, 학업부진아동, 정서적인 장애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아동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셋째, 우리 나라 아동복지사업의 토착화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토착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다. 가족주의 자체가 우리의 좋은 점이므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앞선 외국이론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런 상황을 살려가면서 개념화하고 구조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자휼전칙의 규정 가운데 아동복지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지만 원자료의 이해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하여 논의의 전개상 큰 한계를 느껴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때문에 도처에서 무리한 논의의 전개와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와 약점은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조망하고 설명하여 거기에서 이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복지사관의 개발을 통해 극복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경국대전」, 혜훈조.

곽효문, 「정약용의 인사행정개혁론」, 한국행정사학지 제5호, 서울 : 한국행정사학회, 1997.

_____, 「조선조의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8호, 서울 : 한국행정사학회, 2000.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제, 1969.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Ⅱ-농업변동, 농학사상」, 서울 : 일조각, 1971.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1993.

김택규,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서울 : 일조각, 1979.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대한민국 민법 제2절 양자규정.

「만기요람」, 채용편.

신호석, 「승정원일기 1」,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61.

이호철, 「19세기 농업문제의 성격」,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이회덕, “고려초기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 『역사학보』 94-95 합집, 1982.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5.

『정조실록』, 30권 75장, 정조 14년 7월 戊子條.

조 광,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주정일 외, 『아동복지학』, 서울 : 교문사, 1992.

하상락 편,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 박영사,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서울 : 종로서적, 1980.

Fraser, D.,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73.

Gilbert Neil and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 J.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